

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 1586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
- 나.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립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, 554번지
- 시설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, 연면적 2,884 m^2
- 공사비 : 총 118억원(공사비 103억, 감리비 10억, 설계비 등 5억)
- 공사기간 : 2019. 8. 1. ~ 2021. 3. 31.(20개월)
- 개관 : 2021. 4월

나. 시설용도

○ 노인요양시설(77명), 주야간보호센터(29명)

구 분	층별 용도	면적(단위: m ²)
지상 4 층	요양실(4인실 7개, 2인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3 층	요양실(4인실 7개, 특별실 1개) 치매전담실(4인실 2개, 1인실 1개)	748.53
지상 2 층	주야간보호(치매전담실) 작업/물리/운동치료실, 식당, 주방 등	797.53
지상 1 층	로비, 사무실, 원장실, 보호자 면회실 등	442.53
지하 1 층	전기, 기계실	253.82

다. 주요 위탁내용

○ 위탁기간 : 5년(2021.4.1.~2026. 3.31.)

※위탁운영 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

○ 위탁사무

- 노인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 포함) 관리 및 운영
-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(치매 등)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, 인지능력 향상,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
-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⇒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(관리·운영의 위탁)
⇒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신명근(☎2133 -7422)